

잡지의 폭로기사에 대한 진단

유재천
서강대 신방과 교수

1. 서론

최근 우리나라의 잡지는 그것이 종합지이든, 여성지이든, 또 주간지이든 월간지이든 상관없이 대중지의 성격을 지닌 잡지는 모두 추문이나 비리를 폭로하는 기사로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폭로주의 저널리즘」이라고 지칭한다. 그리고 이같은 잡지의 폭로주의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역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실을 들추어내기보다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구문을 이리저리 다시 엮어 기사를 만들기 때문에 제목만 그럴듯할 뿐, 진실의 규명에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받는다.

그러나 현행의 우리나라 잡지가 추구하는 폭로주의는 진정한 의미의 「폭로저널리즘」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비판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일반 독자들은 지금 우리나라 잡지들이 쓰고 있는 폭로기사가 「폭로저널리즘」이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념상의 혼돈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혼란으로 인하여 「폭로저널리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예컨대 명예훼손과 사생활의 침해 등을 일삼는 언론관행이라는 생각만을 굳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잡지의 폭로기사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보다 명백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진정한 의미의 「폭로저널리즘」이란 무엇인가를 살펴 봄으로써 오히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뜻의 「폭로저널리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같은 전제에서 먼저 「폭로저널리즘」으로 묶어볼 수 있는 「탐색보도」(Investigative Reporting)와 「폭로보도」의 성격과 기능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2. 「폭로저널리즘」의 성격과 기능

「폭로보도」란 광의로는 일종의 저널리즘 스타일이며, 협의로 쓸 때는 1902년부터 1912년까지 미국의 잡지언론인들과 저술가들이 미국의 정치와 기업의 추문이나 비리를 파헤치는 기사를 쓰거나 저술을 했던 것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 「폭로보도」의 특징을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폭로보도」는 대기업, 정치권력, 폭력범죄조직 등의 부정부패나 범죄와 같은데 원초적인 목적을 둔 것이다. 말하자면 사회악의 구조적 성격을 파헤쳐 고발함으로써 사회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사회개혁적 의지에 바탕을 둔 저널리즘이다.

둘째, 따라서 「폭로보도」는 현재(당시)의 사회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과거의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셋째, 「폭로보도」는 그 사회의 거대한 권력구조라 할 정치권력, 대기업, 조직폭력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철저한 사실에 입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이

저널리즘의 스타일상의 특성은 장기간에 걸친 철저한 취재, 그것을 통한 명확한 증거(사실)의 확보에 있으며, 이를 위해 조직적인 취재가 필요하지 않을 수 없다는데 있다. 넷째, 「폭로보도」는 머크레이커(muckraker)라 불리웠던 전문언론인이나 저술가들에 의해 행해졌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정치권력이나 대기업가 혹은 조직폭력과 대결해야 했으므로 불굴의 용기를 지니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

1980년대부터 대두하기 시작한 「탐색보도」는 간단히 말해서 최근판 「폭로보도」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를 ‘뉴 머크레이킹’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실상 「탐색보도」는 월남전과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오늘에 다시 태어났다고 할 수 있다. 「탐색보도」역시 「폭로보도」와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한가지 특이한 양상은 취재대상이 되는 사건이 기자들에 의해 발견된다기 보다 폭로나 고발에 의해 더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즉 정부의 비리 등이 우연히 새어 나와 이를 기자가 감지하고 탐색을 시작한다기 보다, 정부내의 관리가 어떤 기사를 골라 스캔들이 되는 자료를 고의로 폭로해 준다는 것이다. 사실상 그렇지 않고는 비밀을 공개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 수단이 기자들에게는 없으므로 「탐색보도」는 처음부터 힘들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관리들이 자기 자신이나 동료들의 이익을 위해, 또는 정부의 정책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킬 목적으로, 혹은 반대자들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정보를 고의로 흘림으로써 가능해진다. 이러한 「탐색보도」는 기자가 어떤 취재대상을 선택했다면, 즉 약간의 힌트나 예감을 얻고 나서 끈질기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결과인 것이다. 그러므로 「탐색보도」는 어떤 연구문제나 가설을 세우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학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일종의 지적 작업과정이라 할만 하다. 즉 「탐색보도」를 하는 기자는 자신이 선택한 취재문제에 대한 대답을 얻을 때까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여하한 단서도 지나쳐 버리지 않으며, 평가해 보지 않은 정보라고는 하나도 없을 만큼 철저하게 취재하고, 거기서 얻은 사실들을 종합해서 그것이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취재과정에서 기자들은 자연스럽게 서류나 인터뷰에 많이 의존하게 되며, 때로는 이종으로 취재팀을 만들어 같은 대상을 놓고 이종 인터뷰를 하는 식으로 수집자료의 확인을 거쳐 정보의 신빙성을 확보하기도 한다. 예컨대 바레트(Barlett)와 스틸(Steele)은 필라델피아 인콰이어(philadelphia Inquirer)의 한 팀으로, 일만 건에 달하는 범죄기소기록, 2만 페이지에 이르는 법정에서의 증언, 1천 건의 정신과 의사들의 평가서, 4천 페이지에 달하는 컴퓨터 분석자료를 검토한 끝에 법원의 판결제도가 평등하지 못하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탐색보도」는 철저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끝에 하나의 기사가 되는 것으로 투철한 기자정신과 끈질긴 노력, 그리고 물질적, 정신적 후원이 필요한 저널리즘 스타일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은 「폭로저널리즘」은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먼저 순기능 몇 가지를 지적해 보면 첫째 환경의 감시자로서 보다 적극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며, 둘째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옹호하고 이를 더욱 보강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 셋째 사회개혁을 유도하여 사회정의를 확립케 하며, 넷째 이를 통해 평화 속에서 개혁을 이룸으로써 폭력적인 방식에 의해 정부가 타도되거나 사회혁명이 발생하게 되는 근원을 제거해 주는 기능을 한다. 뿐만

아니라 필요하고도 중대한 비리의 구조를 파헤친 경우 그 기자나 신문의 명예가 크게 떨어지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겠다.

그러나 「폭로저널리즘」이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아무리 철저하게 사실을 확인한다고 할지라도 그 성격상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훼손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것은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변명되지만 실제로 사건 주변인물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는 흔히 일어나고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된다. 나아가 「폭로저널리즘」은 국가이익을 침해할 가능성도 크다. 무엇이 국가이익인가, 누가 그것을 판단하는가, 국가안보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기적 효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장기적 영항의 관점에서 따져야 하는가 등의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국가이익이나 국가안보에 타격을 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폭로저널리즘」은 어떤 스타일의 저널리즘보다 더 책임에 충실해야 되며, 폭로라는 언론의 기능과 공익의 균형감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 언론과 인권 침해

인권의 개념은 말할 것도 없이 인격권만이 아닌 다른 모든 기본권을 포괄하는 것이다.

「세계의 인권선언」 뿐만 아니라 현대국가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은 기본권 전반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헌법도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에서 언론과 인권의 관계에 대한 관심은 마땅히 모든 기본권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법 앞에 평등할 권리, 신체의 자유, 양심과 종교와 학문 및 예술의 자유, 재산권 등 모든 기본권을 언론이 얼마나 지원하고 있으며, 또는 침해하고 있는가에 우리의 관심을 넓혀야 한다. 언론과 인권과의 관계를 보다 광의의 뜻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그럼으로써 언론이 참다운 본래의 구실을 다하게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을 전제로 하고 언론과 인권침해를 언론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에 한정시켜 논의해 보기로 한다.

인격권에 대한 침해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언론에 의한 침해는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로 요약된다. 우리 헌법은 제 10 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또 제 17 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 18 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헌법조항은 모두 명예권과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우리 헌법은 제 21 조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고,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명예는 사람의 인격, 능력, 기타 사회성원으로 지니고 있는 속성에 관한 사회적인 적극 평가이며,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명예를 누릴 권리가 있다. 한편 프라이버시는 사적인 사항이 권한없이 공포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는 개인의 홀로 있을 수 있는 사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겠다. 이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광의로 해석하면 인격적 이익의 총체가 되며, 협의로

파악할 때는 (1) 비밀영역에 대한 권리, (2) 사적 영역의 존중에 대한 권리, (3) 인격적인 감정 세계가 존중될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 생활이 침해받지 않을 권리로 이해할 수 있다. (1) 개인으로서의 정신적, 심리적 본질 또는 성명, 초상, 혈통 등 개인의 동일성의 표상에 대한 타인의 침입과 공개에 저항하고, 그 이용과 공개의 범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힘, (2) 서신, 전신, 전화 등에 의한 개인의 사적 정보와 개인의 사적 활동에 대한 감시에 저항하고, 그 공개와 폭로의 범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 (3) 개인의 사적인 생활공간, 즉 자체 재산, 문서, 장서 등에 대한 물리적 및 기타의 침입에 대한 자유 등을 프라이버시의 권리에 포함되는 이익이라고 보는 관점도 협의의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대체로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우리나라의 경우 명예에 대한 권리와 미분화된 채 혼용되어 온 경향이다. 그러나 이 두 권리에 대한 개념은 구분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들 권리에 대한 침해도 분리되어 규제되어야 할 것이다.

명예훼손은 개인의 명성이나 신망에 대한 침해를 말한다. 훼손이란 개인에 대한 존엄, 경의, 신용 등을 떨어뜨리거나 혹은 개인에게 불이익을 야기시키는 것, 또는 개인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명예훼손이란 (1) 개인을 공공연한 증오·비방·혐오·모욕적 언동·악평·경멸·조롱·배척·강등·창피 등에 노출시키는 말, (2) 올바르게 생각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타인에 대한 좋지 않은 의견을 갖도록 유발하는 말, (3) 사회에서의 우호적인 상호작용과 신용을 박탈하는 말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뉴욕주 형법은 명예훼손을 단순한 말보다는 문서·인쇄물·초상·인쇄된 그림(사진)·사인 등에 의한 악의 있는 공표로서 (1) 생존해 있는 사람이나 죽은 자에 대한 기억을 증오·비방·경멸·조롱에 노출시키는 것, (2) 타인으로 하여금 개인을 회피하도록 만드는 원인, (3) 개인의 직업이나 사업 또는 협동이나 교제관계에 손상을 초래하는 성향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은 여섯 가지로 요약된다고 한다. (1) 명예의 주체인 사람, 즉 피해자의 특정성 또는 특정 가능성, (2) 행위의 공연성으로서 살아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할 때, (3) 사실의 적시로서 적시된 사람의 사회적 지위 또는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특질이면 무엇이든 전부 해당된다. 다만 그 사실을 형법 제 310 조의 사실증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된다. (4) 사실의 적시행위로서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방법으로 구두이건, 문건이건 제 3자가 인지할 수 있는 외부적 표명은 모두 이에 포함된다. (5) 피해자에 대한 어떤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그 사람의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침해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침해할 필요는 없다고 할지라도 침해될 위험성이 있다면 그것은 명예훼손이 된다. (6) 고의의 여부로서 어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기타 출판물이나 전파매체를 통해 전기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였을 때에는 성립되며, 고의성이 개재되었을 때는 물론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한편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일반적 방법에 의해 침해된다고 한다. (1) 개인의 사적인 사사로울 일을 당혹케 하는 공적 폭로, (2) 성명, 초상의 남용, (3) 사사의 왜곡된 공표, (4) 사적 생활, 독거, 은둔생활이나 조용히 지낼 권리에 대한 침입 등이다.

4 . 잡지 폭로기사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잡지들이 매달마다 앞다투어 상품으로 내세우고 있는 폭로기사는 「폭로저널리즘」과 견주어 볼 때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인가를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잡지의 폭로기사는 거의 모두가 과거에 있었던 정치적 사건이나 인물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당시)의 구조적 사회악을 파헤치고 고발하는 「폭로저널리즘」과 차별적이다. 우리의 경우 폭로기사는 주로 한 정권이 무너지고 다른 정권이 들어서는 과도기에 등장해 왔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승만정권이 붕괴된 4.19 이후 민주당정권시절, 박정희 정권이 무너진 뒤 이른바 제 5 공화국 탄생 전까지의 과도기, 그리고 전두환 정권이 물러가고 제 5 공화국과의 단절이 과제로 대두된 이후 지금까지의 시기에 폭로기사가 상업잡지의 주된 상품이 되어왔다는 사실이 이를 증거한다. 따라서 우리의

폭로기사는 「폭로저널리즘」처럼 당시의 구조적 사회악을 다루는 데서 당연히 감당하지 않으면 안될 위협을 회피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말하자면 우리 언론은, 그것이 신문이건, 잡지가건 상관없이 죽은 자에게 칼을 들이대는 비겁한 태도에 자리 잡고있는 것이다.

둘째, 「폭로저널리즘」은 장기 간에 걸친 자료수집과 신빙성 확보를 위한 끈질긴 확인의 과정을 거쳐 풍부하고도 신뢰할 수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진실을 밝히는 데 반해 우리의 폭로기사는 그와 같은 저널리즘의 관행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우리 폭로기사의 대부분은 짧은 시간안에 다른 잡지와 의 상업주의적 경쟁에 떠밀려 만들어지는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기 때문에 풍부한 자료의 제시나 사실의 신빙성이 크게 결여되어 있는 것들이다. 대체로 제목만 폭로성이 강할 뿐, 내용은 이미 세상에 알려진 것들을 재구성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 한심한 작태는 이 잡지, 신문에 이미 보도된 것들을 이리저리 재구성한 폭로기사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라 하겠다.

셋째, 특히 여성잡지의 경우 폭로기사는 개인사생활의 스캔들로서 「폭로저널리즘」이 다루는 구조적 사회악과는 근본적으로 그 대상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사로운 흥미에 영합하는 퇴영적이며 말초적인 지극히 비사회적인 관심사일 뿐이다.

넷째, 「폭로저널리즘」은 예컨대 무크레이커라 불리는 전문언론인이나 저술가들에 의해 성립되었다. 즉 전문성을 갖춘 언론인이나 저술가가 담당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그러하지 못하다. 전문성이 크게 결여된 기자나 이른바 르뽀 기자들이 이런저런 전문영역의 문제를 다룸에 따라 취재대상을 깊이 있게, 그리고 구조적으로 파헤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폭로기사는 알팍한 흥미거리에 지나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우리 잡지들이 다루는 폭로기사는 「폭로저널리즘」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황색저널리즘」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이다. 언론의 관행으로 볼 때 선정주의는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 파행적인 관행이다. 선정주의 저널리즘은 잘 팔리는 신문이나 잡지를 만들기 위해 언론의 윤리와 책임을 냉혹할 만큼 무시하고, 야하고 저돌적이며, 감각적이고 무모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 독자를 유혹하기 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들을 왜곡하고 신빙성에 무관하며 진실을 멜로드라마로 각색한다. 영국의 왕립언론평의회는

선정적 보도를 (1) 특정한 의미를 극도로 강조하며, (2) 독자의 흥미를 선동하고, (3) 사건을 실제보다 흥미롭고 중대한 것처럼 윤색하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학자에 따라 언론을 (1) 이야기모형(Idea of the story)과 (2) 정보모형(Idea of the Information)으로 나누어 보는 견해가 있다. 간단히 말해 「이야기모형」은 기자들이 사실의 수집보다는 이야기의 취재를 위해 현장에 나가고, 이야기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 그 결과 「이야기모형」의 언론은 오락적 요소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비해 「정보모형」은 꾸미지 않은 사실을 공급하는데 언론의 기능이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때의 정보는 「즉시 증명 가능성」이라는 사회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특성을 지니게 된다. 다시 말해서 「정보모형」의 저널리즘이 추구하는 것은 「사실로 하여금 진실을 말하게 하는 것」이며, 「사실 그 자체가 스스로 자명한 것」이라는 점이라 하겠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잡지들이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폭로기사는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모형」의 전형에 속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폭로저널리즘」은 리얼리즘의 염원에 뿌리를 둔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5 . 결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지극히 신중하게 사실을 캐어내고 보도하는 「폭로저널리즘」에 있어서도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사례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하물며 오랜 동안에 걸쳐 사실을 발굴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급조해 내는 우리의 폭로기사의 경우는 그러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사실의 원천에 대한 확인이나 공개없이 만들어내는 폭로기사가 지니고 있는 인권침해의 문제는 결국 언론의 윤리적 책임에 귀착된다.

인간은 그가 취한 권리는 물론, 부여받은 권리와 쟁취하지 못한 권리에 관해서 주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배우고 깨닫게 된다는 점을 언론은 깊이 인식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언론은 그 자체가 인권의 사회화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대행기관임을 언론 스스로가 자인해야 하겠다는 뜻이다. 언론은 인간에게 그들의 권리를 인식하도록 돕는데 있어서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언론의 주요한 과업은 모든 사람이 그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 권리를 향유하게끔 보장함으로써 인권을 생생한 실체가 되도록 만들게 도와야만 한다. 교육자와 마찬가지로 언론은 모든 사람이 자신과 타인을 위해서도 인권을 존중하고 존중받도록 가르칠 책임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언론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데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언론 스스로 존재의의를 부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개인이 아무리 자기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자각한다고 해도 그 권리가 침해받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므로 언론의 두번째 중요한 구실은 언론이 이러한 인권침해를 폭로하고 비난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언론이 스스로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를 초래하는 지금과 같은 폭로기사를 상업적 고려에서 계속한다는 것은 자신의 존망 자체를 자진해서 위협하며, 자신의 존엄을 자해하는 행위 이상이 아니라 하겠다. 언론이 이상과 같은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언론매체 자체가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가치체계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그러한 언론이라면 적어도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인권침해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우리 잡지언론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가치체계를 보다 확고하게 다지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우리 잡지도 지금과 같은 폭로기사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폭로저널리즘」을 추구해 봄직하다고 여긴다.

현대 인쇄매체가 전화매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찾아낸 생존방식인 「탐색보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지금과 같은 잡지나 신문의 폭로기사로서는 과거의 비리척결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며, 나아가 냉철한 비판과 판단 등 이성적으로 접근해야만 할 진상의 드러냄과 척결을 하나의 흥미거리로 환치시킴으로써 오히려 모호하게 만들거나 방해하고 있다는 자성도 해야 할 것이다.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졸,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매스컴 전공)

□ 저술: 「한국의 언론」 (1958 공저), 「현대 사회와 대중문화」 (1975. 공저) 「인류의 미래상」 (역서),

「매스컴 조사방법론」, (역서) 「한국언론과 언론문화」 외

□ 현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중재위원회 위원